



인권운동은 협중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 📍 일시 : 2025년 12월 16일(화) 오후 3시
- 📍 장소 :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다목적홀 (4·6호선 삼각지역)

🌟 이야기 패널

- 혐오 대응, 제도적 접근 넘어 :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 혐중집회를 둘러싼 고민 :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 가짜뉴스 근절이 위협하는 것 :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 극우화되는 청소년이 문제? :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폭주하는 남성성의 렌즈로 볼 때 : 수수 (한국성폭력상담소)

☀ 토론회 소개

비상계엄 1년과 세계인권선언일의 12월, <인권운동은 혐증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토론회를 엽니다. 전쟁의 참혹함, 파시즘에 대한 반성 속에 탄생한 세계인권선언을 상기합니다. 혐오정치의 토대에서 시도된 내란은 막았지만, 그 파동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혐증으로 결집한 극우세력의 집회가 확산되고, '노차이니즈 존'도 등장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격화될 혐증의 흐름을 어떻게 끊어낼지 고민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권리를 왜곡하며 극단주의가 무너뜨리고 있는 인권의 기초를 어떻게 지키며 세워가야 할지 인권운동의 도전이 놓여있습니다. 여러 이슈와 현장에서 쌓은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지렛대로 삼으며 혐증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요. 인권운동더하기 소속단체가 아니어도 환영입니다. 동료 인권활동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진행

- 3:00-4:20 패널 이야기
- 4:20-4:30 쉬는시간
- 4:30-5:50 플로어 토론

☀ 목차

- “인권운동은 혐증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 혐오 대응, 제도적 접근 넘어 : 홍성수 _ 3p
- 혐증집회를 둘러싼 고민 : 랑희 _ 11p
- 가짜뉴스 근절이 위협하는 것 : 희우 _ 21p
- 극우화되는 청소년이 문제? : 공현 _ 26p
- 폭주하는 남성성의 렌즈로 볼 때 : 수수 _ 31p

[토론1]

혐오 대응, 제도적 접근 넘어

홍성수 (숙명여대)

1. 혐증정서가 정치와 만나다

▪ 2000년대 이후 동북공정, 미세먼지, 코로나19, 2022 베이징올림픽 편파판정, 한한령, 주한민국 THAAD 배치, 한국 연예인 비난, 역사왜곡, 동북공정, 조선족/중국동포 혐오 콘텐츠(영화, 개그 소재 등)등으로 반증 정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왔음

[2025년 11월 시사IN/한국리서치 조사]

중국인 대상 혐오발언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 41% (극우성향자 51%)

최근 명동과 대림동 등에서 벌어지는 반증 시위는 정당하다 - 36% (극우성향자 59%)

중국인 범죄자는 다른 외국인 범죄자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34% (극우성향자 36%)

국내에 있는 중국인은 추방해야 한다 - 21% (극우성향자 51%)

한국 경찰 조직 안에는 중국 공안이 잠입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 29%

학교 또는 중국계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판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 29%

12.3 비상계엄 당일 주한미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사실이다 - 18%

▪ 범극우/보수와 보수 개신교의 타겟팅 전환: 북한에서 중국으로, 반북 이데올로기에서 혐증으로, 반동성애/반이슬람에 이어 혐증으로

▪ 25년 12월 불법적 비상계엄 이후 보수 정치와 극우보수세력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혐증을 동원하기 시작: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12월 3일 제1차 대국민담화, 12월 4일 제2차 대국민 담화, 12월 7일 제3차 대국민 담화에는 혐증 관련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12월 12일 제4차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 드론 촬영 사건 등 중국 간첩 문제가 심각한데, 야당이 이에 대한 대처를 막고 있다',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 하지만, 2025년

1월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1월 15일 체포 전 영상 메시지 등 총 2025년 들어 13번의 메시지는 여기에는 중국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음. 하지만 지지자와 극우언론에서 혐종 정서를 이용하여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시작함.

일부 극우 언론에서 '선관위 연수원에 중국인 해커 90여명이 계엄군에 의해 체포됐다'고 보도 (소위 '중국 부정선거 개입설')

"중국인 유학생 3명이 2년 동안 촬영한 휴대전화에서 수많은 군사시설 사진이 발견됐다. (중략) 그래서 간첩죄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인데, 누가 막고 있나" (박충권 의원, 2024.12.13.)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있는 90명의 중국인 해커 부대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24. 12. 26. 스카이데일리)

"탄핵 찬성한 한국인들은 보시길. 국가전복에 동조하신 겁니다. 뉴스 보지 마세요. 언론은 이미 위안화 그리고 한국 말하는 화교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스스로 사고하세요 한국인의 입장에서"라는 글 공유 (김민전 의원, 2025년 1월 5일)

"오늘 아침 신문에도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여 명이 일본 내 미군 부대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 관련 자백을 했다는 내용이 나왔다." (윤석열 대리인 배진한 변호사, 25년 1월 16일)

국힘 비공개회의서 중국 부정선거 개입설 여론전 활용 제기 (2025년 1월 17일)

"중국이 우리나라 선거에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친중(親中)'인 걸 고려하면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윤석열 대리인단, 25년 2월)

"현재 한국은 중국과 북한에 의해 하이브리드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의 탄핵 남발로 행정부와 사법부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차기환, 윤석열 현재 최종변론)

인터넷 등을 통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는 중국인 색출 소동,,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실업급여, 건강보험, 참정권, 입시 등에서의 중국인 특혜론 제기

"중국의 '샤프 파워'가 서울대까지 침투했다"며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 폐쇄를 촉구(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25년 4월 15일)

구로의 주인은 대한민국이라며 중국인 밀집 지역인 개봉역을 '을지문덕역'으로 바꾸겠다고 공약 (자유통일당 서울 구로구청장 후보, 25년 4월)

25년 4월 이후: 건대양꼬치거리, 대림동, 안산 등지에서 혐종 시위 확산

▪ 즉, 윤석열의 비상계엄의 명분으로서 '중국'은 거의 의미 없는 것이 없으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보수정치의 활로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혐종'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2.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

- 외국 사례들을 보면 혐오 확산의 배후에는 늘 ‘정치’가 있었음. 혐오를 효과적으로 통제했던 모범 사례의 비밀도 정치의 힘이었고, 반대로 혐오의 확산을 부추긴 것도 정치.

“혐오 확산의 키는 정치가 쥐고 있다.”

- 정치와 혐오시위가 호흡을 맞추는 방법

- 혐오시위: “중국인은 꺼져라!

- 정치: ‘중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

- 즉 혐오시위가 험악한 구호를 직접 외치고,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면, 정치인들은 입법과 정책으로 포장하여 이를 지지, 동조, 지원함. (cf.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3법)

- 외국의 혐오 확산 사례들을 보면, 온라인에서의 표현이 오프라인에서의 정치적 행동으로 바뀔 때, 폭력으로 나아갈 때, 특히 표적집단을 향해 물리적 공격을 가할 때, 정치인들이 혐오를 이용하여 선동·조장할 때, 특별히 위험한 상태가 되었음. (극우 혐오 시위대 - 극우 개신교 - 극우 정치의 결합)

3. 혐오의 오도된 타겟

- 혐오시위도 부정선거 개입, 장기 매매, 흉악범죄, 건강보험 무임승차, 부동산 장악, 화재 배후 등 온갖 문제를 중국인들에게 덮어씌우고 있지만, 대부분 허무맹랑한 거짓이거나 지엽적인 문제를 과장한 것에 불과함. 일례로 범죄 건수나 건강보험 부정수급자 중 중국인 숫자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단순히 주한 외국인 중 중국인의 수가 많기 때문임. 지난 3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은 절반 이상이 한국계 중국인 또는 중국인이었음.

- 시위 장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정말 중국에 관한 입법과 정책이 문제라면, 대통령실, 청와대, 관계기관에 가서 시위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시위대는 엉뚱하게도 중국인 관광객이나 중국동포들을 향하고 있음. 설사 중국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양동과 대림동의 중국동포 상인, 구로와 안산의 중국계 이주노동자, 명동의 중국 관광객이 책임질 문제가 전혀 아니며,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님.

- 현재의 혐종은 공동체의 구성원인 조선족/중국동포, 중국계 외국인노동자 등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인종주의적 혐오와 차별로 볼 수 있음.

- 혐오시위가 이렇게 오도된 타겟을 정해 시위를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형적인 모습 (스코키 지역에서의 반유대인 시위, 이주자 밀집 지역에서의 반이주자 시위, 난민촌에서의 난민반대 시위). 혐오시위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 인터넷에서의 조롱이나 비난 → 오프라인 시위 → 정치와의 결합 → 혐오대상을 직접 향한 시위 등은 혐오가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으로 나아가는 전형적인 경로

”지금 당장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 ‘혐오표현’에서 ‘차별’로
 - 급기야 서울의 한 카페가 “노 차이니즈 존”을 선언. 혐종은 이제 더 이상 ‘표현’이 아니다. 중국이라는 이유로 분리하고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차별’로 나아가고 있는 것.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신호.
 - 혐종시위는 실제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음.

4. 혐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표: 22대 국회에서 혐오/혐종 대응으로 발의된 법안>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조인철 의원)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법상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최민희 의원)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복적으로 또는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차지호 의원)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 시스템적 위험평가 완화조치 항목에 "허위정보·혐오표현·차별 조장" 추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개정안(위성곤 의원)	금지되는 집회시위에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추가.
	집시법 개정안(김태년의 의원)	" 특정 인종 · 특정 국가의 국민 · 장애인 등 이에 준하는 식별 가능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 혐오 또는 폭력을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금지함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의 소음 · 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회시위 금지 통고
	집시법 개정안(엄태영 의원)	집회 시위 주최자의 준수사항(금지행위)에 "특정한 인물 · 대상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반복적인 비방 · 모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포함
정당법	정당법 개정안(박지혜 의원)	(정당활동에서)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 시설물 ·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때에는 허위사실, 혐오적이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 추가
	정당법 개정안(채현일 의원)	"혐오감을 느끼게 표현하는 것,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당 현수막 금지
	정당법 개정안(손솔 의원)	"인종, 피부색, 국적이나 민족을 이유로 그 집단이나 구성원을 멸시, 배제하는 혐오 선동 또는 혐오폭력을 유발하는 선동("인종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당 현수막 금지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김영배 의원)	금지광고물에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 또는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포함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손솔 의원)	"인종, 피부색, 국적이나 민족을 이유로 그 집단이나 구성원을 멸시, 배제하는 혐오 선동 또는 혐오폭력을 유발하는 선동("인종 혐오표현")하는 내용의 정당 현수막 금지
형법	형법 개정안(양부남 의원)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개정안(신장식 의원)	(증오선동) 성별, 종교, 장애, 민족·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공연히 조장·선동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고민정 의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로 "출신 국가,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주거지 등을 말한다),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혐오·차별하기 위한 목적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포함
	방송법 개정안(최민희 의원)	심의규정에 포함될 내용으로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에 관한 사항" (현행법: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신장식 의원)	차별행위에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적대적·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수치심·모욕감·두려움 등을 야기하거나, 멸시·모욕·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추가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윤후덕 의원)	인권위 진정 대상으로 다음 내용 추가 1.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 2.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을 공개적으로 모욕·위협하는 행위 3.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제한·배제하는 내용을 유인물, 이미지 등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보급하거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게시·배포하는 행위 4.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 현재 발의된 법안의 문제점: 2010년 이후 표현의 자유 운동의 성과와 혐오대항운동의 성과, 학술적 논의의 발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으며, 시민사회/학계와도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혐증’이라는 현안에 대한 대처에만 급급한 상태

- 혐오표현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 혐오표현의 사유(인종, 성적 지향 등)를 어떻게 나열할 것인지,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를 고려하여 금지되어야 할 표현을 어떻게 구획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음

- 법적 규제로는 거친 구호를 내뿜는 혐오시위의 일부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입법/정책으로 위장하여 이를 지원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은 전혀 규제할 수 없음. 문제를 야기하고 지속시키고 극단화하는 문제의 근원을 내버려둔채 겉보기에 과격해 보이는 표현만 금지하는 격이 될 수 있음. (cf. 5.18 왜곡발언금지법의 교훈)

- 혐오정치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규제 방안이 필요함: 정치인/공직자 혐오표현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방안, 정치개혁, 시민통제 등

- 미국식 접근을 선택할 것인가? 유럽식 접근을 선택할 것인가? 혐오표현은 내버려두고 차별, 혐오범죄 단계부터 강력한 규제 vs. 혐오표현 단계부터 강한 규제 → 혐오표현금지법, 차별금지법, 혐오범죄가중처벌법 입법의 선후 문제

- 가장 큰 문제는 역시 2010년 이후 혐오/차별에 대한 시민의식이 크게 향상되었고, 법적,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다가 우려했던(아주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태가 터지자 부랴부랴 설익은 대처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을 비판하지 않았을 수 없음.

5. 혐오와 대항운동(counter-act)

- 혐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로서의 대항운동/대항표현(counter speech): 언론 팩트체크, 시민운동, 혐중반대시위 학교교육, 시민교육, 정치인의 발언/개입

“중국인/중국동포는 소중한 이웃”, “내 친구 중국인 환영한다.”, “내 이웃 중국동포 혐오 말라” (25년 7월 대림동에서 한국인/중국인이 함께한 혐오중단 집회)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한 ‘혐중시위 반대 캠페인’(25년 9월 25일)

울산 동구에 정착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29가구 157명의 자녀가 울산 내 학교에 첫 등교할 때,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한 노옥희 교육감 (2023년 3월)

“(강남역 여성살해사건을 두고) 혐오범죄라 보기 어렵다”(2016년 강신명 경찰청장)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를 두고) “혐오와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와 지역공동체의 대응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 지원할 것” (2022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노차이니스존 카페를 두고) 보내주신 우려의 마음 저 또한 깊이 공감합니다.. 최대한 입장을 설득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정원오 성동구청장)

“(대항표현 정책) 모델은 대항표현의 생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원의 제공을 요청한다. 이러한 대응은 혐오발화자가 혐오표현에서 행한 주장들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게끔 해줄 수 있고, 또한 되받아쳐 말할 수 있도록 혐오표현의 피해자들의 능력을 강화해 줄 수 있으며, 따라서 혐오표현행위를 무장해제하고 능력을 박탈하는 침묵효과를 극복하게 해줄 수 있다.” (캐서린 캘버, 말대꾸: 표현의 자유 vs. 혐오표현, 유민석 역, 에디투스, 2019, 273쪽)

“대항표현이라는 용어는 동의하지 않는 메시지에 대항하는 모든 표현을 포괄한다. ... 대항표현은 혐오표현이 전달하는 사상을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표현,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교육 계획, 차별적인 발언을 한 사람의 반성 표명 등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다.(네이딘 스트로슨, 혐오: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 홍성수/유민석 역, 아르테, 2023, 248-249쪽)

※ 일본에서 혐한시위에 대항한 카운터운동의 성과

- 혐오표현의 피해 최소화, 피해자 고통 감소
- 혐한시위확산 저지
- 여론 환기
- 국제연대 계기 마련
- 민주주의의 심화
- 대립 구도의 전환: <인종주의자+일본인 vs. 조선인> → <인종주의자 vs. 조선인+일본인>
- 구체적 성과: 헤이트스피치해소법 통과

→ 중국(인)의 고립을 막고, 혐중/인종주의자들을 고립시킬 수 있는 정치적 실천은 무엇일까?

[토론2]

혐증집회를 둘러싼 고민

랑희(공권력감시대응팀 / 인권운동공간 활)

1. 혐오 집회는 언제부터 우리의 시야에 들어왔나

한국 사회에서 '혐오'라는 표현과 이에 기반한 '혐오집회'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주목받기 시작한 시점은 명확히 하나의 사건이나 시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요인과 사건들을 통해 2010년대 이후 가시화되어 그 심각성이 점차 대두되었다.

2010년대 반다문화(이주노동자 반대), 일베, 남성연대 등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를 부추기는 글들이 확산되었다. 이주노동자, 전라도, 여성, 성소수자, '종북', 5.18에 대한 조롱과 경멸을 일삼았던 이들이 온라인 밖 공간에 집단적으로 등장하거나 단체를 구성해 활동하면서 혐오 집회가 가시화되었다. 퀴어축제를 가로막는 개신교 집단, 광화문광장에서 단식하던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벌인 '폭식 투쟁'과 난민을 반대한다는 집회를 목격하면서 이들이 더는 온라인에만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에도 우려할 만한 사회현상이 눈 앞에 펼쳐졌지만 이를 다룰 규범이 없다는 것에 위기의식이 있었고, 그에 따라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일부 주장 중에는 일베 사이트를 강제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인권운동의 논의는 혐오표현을 규제하기보다는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차별금지법제정을 요구했고, 혐오에 맞서는 대항의 힘을 키우는 운동을 펼쳤다.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중요한 인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기도 했다.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표현의 자유가 권력에 의해 억압되고 후퇴했던 경험과 권력에 저항하는 힘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투쟁을 통해 축적된 원칙과 감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권력에 의해 표현이 검열되고 통제받는 것에 대해 우려와 인간존엄성과 평등을 위해 혐오에 대항하는 조치의 균형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 (이런 고민과 논의는 현재도 유효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집회는 계속 이어졌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개신교 집단과 수요집회 방해하는 무리, 재난참사 피해자를 모욕하는 집단들은 끊임없이 집회를 하고 정치권력이 이들과 함께했다. 동시에 당사자들과 사회운동은 인권조례와 같은 인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혐오세력에 맞서는 투쟁과 법적 대응을 이어갔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 이후 극우집단의 준동이 이전 혐오세력과는 다르게 체감되고, 이들을 그대로 두어선 위험하다는 위기 의식이 저변에 확산했다. 서부지법 폭력 침탈 이후 중국과 중국인, 중국동포를 향한 집회가 위험한 신호로 인식되는데, 이는 집회·시위가 가진 특성때문이기도 하다. 다수의 사람이 집단으로 행동하는 모습에 중국인과 중국동포들은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

혐오 집회를 하는 이들을 그대로 두어선 안 된다는 위기감이 증가한 것은 극우가 무시할 만한 존재가 아니고, 과거와는 다른 양태로 보이기 때문인 것 같다. 거대 야당과 함께 정치적 세력으로 등장하고, 집단으로 움직이며 위협적인 태도를 과시하는 것이 거리뿐만 아니라 거주지와 같은 일상 공간 앞까지 왔다는 점, 온라인을 통해 끊임없이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들 때문일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혐오의 대상이 된 개인/집단이 어떤 보호막도 없이 허허벌판에서 혐오의 칼날을 온몸으로 맞는 것과 같은 감각이라고 생각한다. 혐오의 공격이 거세지기 이전부터 차별을 겪고 정체성을 드러내기 쉽지 않았던 존재였고, 거기에 성별, 성적체성, 이념 등 차별의 요소가 중첩된다면 더 위협적으로 느낄 것이다. 이런 공격적인 상황에서 당연히 국가에 안전과 보호를 요청하게 된다. 이때 국가가 발휘하는 기능은 주로 경찰력 행사를 통한 보호와 입법을 통한 제도화인데, 문제는 이 조치들이 만들어낼 효과다. 응급조치처럼 급조되는 조치가 입법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때는 더욱 그러한 조치가 지향하는 목표가 분명히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극우집단이 발산하는 해로운 표현과 이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우후죽순처럼 많은 법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그 논의에서 오랜 시간 표현의 자유와 평등, 이 두 가지 모두를 증진하기 위해 활동해 왔던 인권운동의 경험과 고민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 소수자 집단이 고립감을 느끼는 것은 혐오세력에 대응할 만한 환경 - 제도, 인적·물적·법적 지원과 지지 등 - 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사회적 원칙 아래 소수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성찰 없이 나쁜 표현을 처벌하겠다는 정부에 질문이 필요하다.

혐오표현을 검열하면 혐오가 줄어들 것인가? 법이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유의미한가? 인간의 신념과 생각, 표현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양함에도 법으로 표현을 통제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혐오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이 무력하게 느끼는 것에 대한 해결과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다른 것인가? 규제가 아닌 비검열적 조치,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제정과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확대와 같은 제도 도입의 계획은 없는가?

2. 집시법 개정으로 혐오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의 등장

집시법에 혐오집회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려는 입법 시도는 2022년부터였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의 유튜버가 몰리고 집회가 반복되자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는 집회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집회 또는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 타인의 기본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

- 윤영찬의원 등 11인
 - 가. “혐오표현”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혐오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2조제7호 및 제16조제4항제4호 신설)
 - “혐오표현”이란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인 편견에 기반한 선동적이고 적대적인 표현 행위
 - 나. 혐오표현을 통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지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 다. 상업적 목적만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거나 이를 중계방송하여 후원금 등을 모금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박광온의원 등 15인
 - 가. 집회 · 시위의 금지 · 제한 통고 대상인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를 소음 · 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히 함(안 제8조제5항제2호 신설).
 - 나. 집회의 주최자 · 질서유지인 · 참가자에게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특정한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 · 유발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6조제4항제3호 신설).
 - 다. 집회의 주최자 · 질서유지인 · 참가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 화상 · 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6조제4항제4호 신설).

이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의 집회금지를 위해 혐오표현의 문제를 끼워 넣었다는 비판을 받았고,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 폐기되었다. 이후 2025년 ‘혐증’ 집회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자 혐오표현, 혐오집회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다듬었으나 이전 집시법 개정안의 기본적인 내용을 그대로 이어졌다.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

[221407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 2025.11.10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221347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3인) / 2025.10.2

가. 특정 인종 · 특정 국가의 국민 · 장애인 등 이에 준하는 식별 가능한 집단에 대한 차별 · 혐오 또는 폭력을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금지되는 집회에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집회 · 시위의 금지 · 제한 통고 대상인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를 소음 · 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히 함(안 제8조제5항제2호 신설 등).

[220898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 2025.3.17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의 금지 행위의 하나로서 특정한 인물 · 대상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반복적인 비방 · 모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규정(제16조제4항제3호 신설 등)

[220406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23인) / 2024.9.19

가.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인 편견에 기반한 선동적이고 적대적인 표현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정의하고자 함(제2조제7호 신설).

나. 집회 · 시위의 금지 · 제한 통고 대상인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를 소음 · 진동, 혐오표현 등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히 함(안 제8조제5항제2호 신설).

다. 집회의 주최자 · 질서유지인 · 참가자에게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개인 혹은 특정 집단에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6조제4항제3호 신설).

라. 집회의 주최자 · 질서유지인 · 참가자에게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행위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 화상 · 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6조제4항제4호 신설).

참고 : 집시법이 아닌 법률로 집회금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사유 추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된 행위로, 출신 국가,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주거지 등을 말한다),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혐오·차별하기 위한 목적의 옥외집회 및 시위

위 개정안들은 ‘혐증’ 시위를 계기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 혐오표현과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집회가 개최되기 전에 혐오집회를 가려내서 금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집시법 5조로 집회를 사전 금지하는 것은 신고 단계에서 ‘차별·혐오 또는 폭력을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임이 명백해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감출 수 있고 실제 표현 또는 행동이 어떻게 드러날지 사전에 알 수 없다. 또한 집회 주최자·질서유지인·참가자에게 혐오표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에 특정 인물에 대한 비방·모욕, 정치적 의견까지도 포함하는데 이는 정치적 비판과 견해를 드러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집회로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 비판과 네타냐후에 대한 비난이 이 조항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의문이다. 특정 국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과 국민 일반에 대한 혐오는 분리되어야 함에도 이런 것들은 종종 섞이기도 하고, 어떤 표현이 금지되거나 처벌되는 경험이 쌓이면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피하지만 혐오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들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들은 집회에 대한 규제의 폭을 넓히고 있다. 금지와 처벌의 대상이 되는 표현과 행위의 집회는 어떤 집회인가? 차별적인 표현이 무엇이든 금지되어야 하는가? 사생활의 평온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하고 소음규제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모든 조항을 근거로 금지하고 처벌할 판단은 전적으로 경찰에게 맡겨지는 구조에서 경찰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규제의 내용을 좀 더 정밀하고 분명하게 수정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 법으로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표현은 다양하고 맥락적이지만 법 조항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따라서 애매하기도 하다. 결국 규제 집행 담당자들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특히 아직 등장하지 않은 미래의 표현과 행동을 사전에 금지하는 것은 매우 명백한 경우만 가능해 그 효과가 기대 이하이거나 너무 포괄적인 규제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다.

3. 혐오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

혐오집회와 관련한 집시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불안해하고 관광업계와 상인들이 피해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와 외교관계 악화의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 변화를 위한 지향은 보이지 않는다.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은 ‘모든 외국·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제한은 세계적보편적 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대응체계를 면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며 혐오 집회·시위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경찰청 혐오 집회시위 대응 방침>

① 집회신고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 홍보 문구 등을 종합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집시법」상 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 <1단계> 집단 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혐오 표현 관리 강화 → <2단계> 집단 마찰 우려 지역 집회·행진 제한 → <3단계> 공공안녕질서 직접·명백한 위협 초래 시 잔여집회 금지

② 현장 대응 단계에서는 참가인원, 행진코스·장소, 혐오 표현의 수위·방식, 주최자의 질서유지 노력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경찰력 규모와 경찰 조치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단순 혐오성 표현에는 대화경찰과 방송 차량을 배치하고, 경고 방송을 집중·반복적으로 송출하여 혐오 발언을 최대한 억제하며, 외국인·상인·시민과 마찰이 발생하거나, 행진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 충분한 경찰력과 장비로 불법행위를 제지·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한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집시법」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이동조치·해산절차 등을 진행한다.

③ 사후조치 단계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 역량에 집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

특히, 경찰은 「집시법」 위반, 상인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허위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집회 주최자가 혐오 표현으로 위협·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집단적 마찰을 유발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원거리로 행진토록 한 제한통고를 위반하여 신고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시 「집시법」상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법률적용하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모욕 등 피해신고 접수시에는 대사관을 통해 절차를 안내하고 고소·처벌의사 등을 적극 확인하여 수사하는 한편, 중·소상공인 업무방해가 있는 경우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채증자료 등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에 착수한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의적 사실관계 왜곡, 허위정보 생성·유통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4일 발족한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전담팀(팀장: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이 발표한 혐오집회·시위 대응 방침 역시 집회 개최 전부터 경찰이 집회에 대해 개입을 하는데 이는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해당 집회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그동안 집시법 5조에 의해 개최될 집회가 단지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추측이나 단체의 과거 집회를 문제 삼으며 집회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와 동일하다. 대응 방침 발표 이후 대림동 집회를 주최했던 민초결사대의 집회에 제한통고를 했다(아래 표 참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2년 동안 진행했던 명동길 행진에 대해 ‘안전사고’와 ‘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제한통고 했다. 이 대응 방침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집시법이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집회는 얼마든지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통제될 수 있다. 그리고 권력자의 강한 메시지는 법을 넘어서 경찰력 행사의 동력이 된다. 국가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침해를 외면하지 않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정부 메시지의 방향이 그러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회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는 낳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혐중 시위’에 대해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게는 중국동포가 그동안 차별을 받아온 구조적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문화적이지 못한,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방치해선 안 되는 문제일 뿐이다.

● 경찰청 '외국-외국인 대상 혐오 집회·시위' 대응 방침 발표 이후 이행 현황 (25.12.05)

• 집회 제한 통고

주관단체	신고기간	집회명	집회장소	신고인원	제한, 금지통고 여부
민초결사대	20251107 ~ 20251205	부정선거 및 중국 공산당 규탄 행진	대림역 4번 출구→문래근린공원 앞	180	제한
민초결사대	20251106 ~ 20251204	부정선거 규탄, 중 국 공산당 척결	중앙우체국→교보빌딩 (광화문역 4출)	180	제한

4. 질문들

집회를 비롯해 혐오표현을 금지하자는 주장의 목적은 차별받는 소수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이를 반대하는 주장은 없을 것이다. 다만 표현을 검열하고 금지하는 것으로 차별과 혐오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렇기에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검열과 금지, 처벌만은 아님에도 평등을 위한 정책과 사회적 환경은 조성하기보다는 규제로만 밀어붙이는 현재 상황을 문제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혐오에 대응하는 것이 국가의 검열과 처벌만이 유일한 수단일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혐오표현과 혐오집회에 대해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 혐오집회를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당장 혐오집회로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빠르게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인권운동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문제들을 함께 풀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의 장에서 어떤 조치들이 표현의 자유와 긴장을 갖게 되는지,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이 긴장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보호하는데 상호보완적이고 필수적인 긍정적 관계라는 원칙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 많이 보장하는 것으로 혐오와 맞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지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집회를 둘러싼 질문들을 함께 고민해 보자. 이 질문이 다른 표현의 장에서도 이어지고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넘어선 논의로 확장되기를 바란다.

- 1) 표현의 장은 다양한데 다른 표현의 형태보다 집회가 더 위험하거나 위해가 큰가?
- 2) 표현은 드러나기 전에 어떤 표현일지 알 수 없음에도 집회금지가 가능한가?
- 3) 집회의 장소와 규모에 따라 그 위해의 정도를 다르게 평가해 그에 따라 규제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

- 4) 집시법(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이미 집회에 대한 다양한 통제가 가능함에도 혐오집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가?
- 5) 경찰의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으로 집회 금지와 집회 중 개입을 허용할 수 있는가?
- 6) 혐오집회를 금지하고 통제함으로써 혐오를 줄이고 차별적 인식을 변화시켜 평등사회에 기여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참고자료>

종교나 신념에 근거한 편협함, 부정적 고정관념 및 낙인, 차별, 폭력 및 폭력 선동
(Combating intolerance, negative stereotyping and stigmatization of, and discrimination, incitement to violence and violence against, persons based on religion or belief)

A/HRC/55/74 (2024년 1월 18일)

- 배경

2011년 인권이사회는 결의 16/18을 통해, 유엔총회 결의 66/167을 통해 종교 또는 신념에 근거한 편협함, 부정적 고정관념 및 낙인, 차별, 폭력 및 폭력 선동에 대항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촉구하였다. 본 보고서는 인권이사회 결의 52/38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인권이사회는 인권최고대표에게 행동계획 이행을 위해 취학 노력과 조치에 대한 상당한 결론 및 계획의 이행 개선을 위한 잠재적 후속조치에 대한 견해를 담은 포괄적인 보고서를 준비할 것을 요청한다.

- 내용

전 세계적으로 종교나 신념에 근거한 편협함, 부정적 고정관념과 낙인, 차별, 폭력 및 폭력 선동에 따른 평화로운 대화와 공존이 점점 더 방해받고 있다. 종교적 차이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무기화되고 조작되어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에 힘을 어주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독보적인 속도와 도달 범위로 혐오 메시지 확인의 매개체가 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종교 기반 행위자들과의 전략적 참여를 포함해 행동계획 이행을 배가해야 한다. 법 집행관과 사법부 종교 기반 활동가, 교사, 미디어 전문가 대상 교육 계획은 더 나은 이해와 감수성을 통합하는 포괄적 접근 방식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법과 정책에서 종교적 혐오에 맞서기 위한 노력은 신중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공정하게 적용되는 비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바트 행동계획은 각 사례의 상황, 발원자, 의도, 내용, 피해의 정도 및 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금지된 선동 사이의 미세한 경계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소셜 미디어 기업은 혐오표현 확산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토론3]

‘가짜뉴스 근절’은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위협하는가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계엄 선언과 내란 시도가 한국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던 지난 시기의 충격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정치적 혼란, 극단주의의 폭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의 급속한 붕괴는 일상 곳곳에 깊은 균열을 남겼다. 이런 흐름 속에서 혐증 정서와 선동이 결합되며 이주민, 중국동포, 소수자 공동체를 비롯한 여러 집단이 불안과 압박을 경험하고 있다.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혐오적 구호가 동원된 집회가 반복되고,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등 일상 공간의 안전과 공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국면 속에서 정치권은 혐오와 허위정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금지·통제 중심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민의힘 역시 혐오 정동에 기대 ‘중국인 쇼핑방지법’과 같은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논의가 진정으로 혐오를 줄여 건강한 공론장을 만드는 방향이 아니라 통제와 검열 중심의 정치적 공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가짜뉴스’라는 표현은 법적 개념이 아니며 국제 인권 기준에서도 사용을 경계하는 용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물론 대통령까지 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징벌적 배상과 형사적 제재까지도 논하고, 실제 법 개정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가짜뉴스’로 간주해 풍자 영상 차단 및 비판 언론에 대한 제재를 반복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같은 구호를 다시 가져온 것은, 결국 권력이 불편한 표현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실제 이렇게 기능할 위험성이 크다. 혐오정치, 내란 이후의 권위주의적 흐름, 정치적 불안정이 뒤섞인 상황 속에서 등장한 ‘가짜뉴스’ 담론은 단순한 허위정보 규제를 넘어 표현의 자유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 규제의 구조적 문제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다. 여러 정의가 있지만 내용의 허위성, 기만적 목적성, 그리고 언론보도 양식성을 띄어야 가짜뉴스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즉 남을 속여서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가짜뉴스로 분류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일반인들의 인식을 보면 가짜뉴스란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유통되는 모든 종류의 루머와 허위정보(disinformation), 오정보(misinformation) 등을 포괄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¹가 있다. 이는 가짜뉴스가 현실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등은 가짜뉴스란 단어 대신 허위정보(disinformation), 오정보(misinformation)란 단어를 정부 공식문서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우리 정부도 가짜뉴스 대신 ‘허위조작정보’를 공식 단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치권과 온라인에서는 ‘가짜뉴스’란 용어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처음에는 ‘가짜뉴스 근절’을 강조하며 정치적 프레임을 형성했지만 실제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가짜뉴스 대신 허위조작정보라는 법적 개념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비난의 언어였던 가짜뉴스가 허위조작정보로 전환되며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허위조작정보 규제의 가장 큰 문제는 개념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허위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의는 권력기관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인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인간의 의사소통에는 사실의 부정확성이 구조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공익적 문제제기나 탐사보도·내부고발은 종종 불안정한 정보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허위표현은 원칙적으로 정정·사실확인·사회적 토론의 대상이지, 그 자체로 삭제·차단의 방식으로 규율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개정안은 이 판단을 방미통심위에 맡기고 있다. 그런데 행정심의를 수행해온 방미통심위는 정치적·자의적 심의, 인터넷 차단 등 국가검열의 문제점을 반복해온 기관이다. 이러한 기구가 허위조작정보까지 심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면 공익적 비판과 감시 기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¹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2021 여름호,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와 언론의 역할, p17.

EU DSA와 전혀 다른 한국형 DSA?

더불어민주당은 이 망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실제로 EU DSA의 핵심 원칙과 체계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이 개정안은 EU DSA가 지향하는 기본권 보장·플랫폼 책임성·절차적 투명성 강화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제법에 더 가깝다.

우선 EU DSA에는 방미통심위와 같은 내용 심의를 수행하는 행정검열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플랫폼에 일반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이용자의 표현물이 대량으로 삭제되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DSA의 신고 및 조치 절차는 불법정보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의제기·분쟁조정 등 이용자 권리를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 있다. 아울러 콘텐츠의 진실 여부를 국가가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라 플랫폼의 절차적 책무성과 투명성, 알고리즘 공개, 위험영향평가, 독립감사 등 권리 기반·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다.

반면 국내 개정안은 불법정보뿐 아니라 허위조작정보까지 삭제·차단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방미통심위라는 행정심의회기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DSA의 기본 원칙과 배치된다. 결국 DSA의 핵심 취지는 사라지고 일부 절차만 가져온 상태에서 개정안을 ‘한국형 DSA’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인식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튜브 등에서의 허위정보 확산 문제만을 강조하며 영향력 기반 규제를 주장하지만, 이는 DSA가 지향하는 권리 기반 접근이나 절차적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DSA는 허위정보의 삭제를 요구하지 않으며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는 사실확인 관행과 자율적 정책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내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삭제와 징벌을 확대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있으니 완전히 반대다.

또한 개정안은 손해액 추정, 징벌적 배상, 악의 추정 등 표현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표현행위 전반을 규율 대상으로 확장시켜 공익적 문제제기나 권력 비판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악의 추정 요건으로 유사한 내용의 반복, 제목이나 자막의 강조, 충분한 사실확인 조치의 미비 등을 규정한 것은 표현행위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과도하게 높여 시민단체·언론의 공적 비판 활동을 사실상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방미통위법 개편 과정 역시 내용 규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적 개입을 더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했지만 심의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방심위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규정하면서 독립성을 더욱 약화시켰다. 이는 행정심의를 법제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표현 규제의 위험을 높인다.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혐오를 멈추지 못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혐오 선동의 핵심은 정보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정체성 정치와 공포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이를 규제 중심 접근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오히려 혐오 세력이 반대로 ‘표현의 자유 수호자’라는 프레임을 차지하거나 소수자를 공격하는 도구가 될 위험이 있다.

규제 중심 대응은 결국 혐오도 줄이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만 침해하는 이중의 실패로 귀결된다. 한국사회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규제적 접근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행정심의회가 강화될수록 공익적 발언과 비판은 위축되고, 극단주의는 오히려 정치적 자연성을 확보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제언 : 사회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고 접근하자

한국에서 반복되는 ‘허위조작정보’ 규제 프레임은 결국 표현의 자유 전반을 규제 대상으로 확장해 온 흐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EU DSA가 강조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의 원칙과도 거리가 멀며, 공론장을 강화하기보다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기능할 위험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적·행정적 규제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접근이 아니라, 왜 한국의 공론장이 취약해졌는지, 어떤 구조적 요인이 혐오와 불신, 극단화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성찰과 이를 복원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다.

이 관점에서 보면 허위조작정보 규제 논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야 한다. 특정인에게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는 허위 표현은 이미 기존 법률로 충분히 규율되고 있다. 허위 명예훼손, 사기, 상표법 위반, 허위 성폭력물 제작 등은 별도의 규제가 없어도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결국 지금 논의의 초점은 피해가 특정되지 않는 정치적 의견이나 해석의 영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선거 과정에서의 주장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본래 공론장에서 상호 검증을 통해 조정돼야 하는 표현들이다. 더구나 ‘허위’는 시간과 맥락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악의’ 역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규제 기준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지금의 규제 시도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공론장에 큰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허위정보 대응이 필요하다면 규제 중심의 행정 통제가 아니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적 사실확인 기관과 사실확인 관행을 지원하는 방향이 우선되어야 한다. 혐오발언 대응 역시 개별 표현을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U DSA를 ‘도입한다’는 정치적 수사보다 중요한 것은, DSA가 실제로 강조하는 플랫폼의 책무성과 투명성 원칙을 검토하고 한국의 내용규제 체계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재구성할 것인지 논의할 독립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하는 일이다.

지금 사회에 만연한 혐오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어떤 규제 하나로 혐오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접근이 아니라 혐오와 검열이 중첩되는 현 상황을 사회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론장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차별금지법과 구조적 평등정책은 혐오 대응의 핵심적 기반이다. 혐오 대응은 검열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가 이를 다시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일반적 악행에는 징벌배상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표현행위에만 징벌배상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표현을 위축시킬 위험 그 이상이다. 표현과 비판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회적 문제를 드러낼 수 없고 그 속에서 구조적 불평등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회가 변화해야 할 방향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이 ‘진실’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를 멈추게 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공론장에서 원칙을 이어가는 일이다. 이러한 흐름의 축적할 때 혐오와 검열의 정치를 멈추고, 권리의 언어가 다시 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4]

극우화되는 청소년이 문제?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인을 납치·장기밀매 한대! 조심해!’ 2025년 10월에 SNS 등을 통해 확산된 괴담(가짜 뉴스?)이다.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많이 퍼졌다고 한다.² 나 역시 실제로 주변의 청소년들이나 교사들로부터, 다른 청소년이 이런 괴담을 믿고 전파하더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혐증/극우 성향이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일상적인 우려를 샀다. 단기간에 공포와 혐오를 선동하는 내용이 전파된 자극적인 사례로 주목받은 이런 사례 말고도, 청소년들 상당수가 부정선거론 또는 민주당/이재명이 나라를 중국에 팔아넘긴다는 식의 주장을 믿는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청소년들의 극우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강화하자’, ‘청소년들의 스마트폰/SNS/유튜브를 규제하자’ 같은 주장의 근거가 되곤 한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규제하려고 하는 움직임 역시 빠짐없이 가짜 뉴스 문제나 극우화 등을 언급한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이 2025년 8월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교실 극우화 방지 3법’은 △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강화, △ 가짜뉴스 및 명예훼손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이라고 한다.

교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은 보편적 인권의 측면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근래에는 교원단체 등에서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극우화된 학생들을 훈육하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들고 나오는 경우를 심심찮게 본다. 교원의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더라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은 유지될 거라는 점 등 따져 보면 이상한 논리다. 그러나 ‘청소년 극우화’라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도 할 수 있겠다.

청소년 극우화를 둘러싸고 여러 말과 정책이 거론되는 것을 보면 몇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가령 왜 극우화된 경향이 뚜렷한 노인 세대에 대해서는 똑같이 심각하게 이야기되지 않는 걸까? 중국인

² 뉴스1, "납치·장기 밀매"...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SNS 괴담' 10대에 무차별 확산, 2025년 10월 2일.

장기밀매 괴담을 믿는 건 심각한 우려 대상인데, ‘꽃뱀 괴담’이나 ‘민식이법 놀이 괴담’을 믿는 것은 걱정되지 않나? 정치인들이나 정당 현수막들이 그런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퍼뜨리는 상황에서 왜 정치인들의 미디어 문해력이 낮으니 교육하자는 이야기는 안 나올까?

청소년도, 극우도 타자화하는 방식

‘극우가 문제’라는 이야기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이후 급격히 불거졌다. 그 이후에도 혐종-극우 현상에 대한 비판은 주로 극단적인 윤석열 지지자에 대한 비판과 결합하여 통용되고 있다. 여기에도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반공주의에 기반해 북한·중국을 비난하며 이어지던 소위 ‘태극기 부대’ 활동에 대해서는 왜 그만큼 우려가 나오지 않았을까? 안티페미니즘이나 극단적인 능력주의 등 극우라고 부를 만한 다른 사회 현상들이 이어질 때는 문제제기가 활발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을 희화화하고 악마화하는 말들, 인종주의적인 여러 문화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윤석열 이후 혐종이 갑자기 문제인가?

지금의 극우 관련 담론이 문제적인 부분은 극우를 정상적인 정치세력의 범주를 벗어난 병리적인 문제, 특수한 존재인 것처럼 인식하고 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극우는 차별과 폭력 등의 문제보다는 ‘극단적이고 망상적이라서’ 문제가 된다. 따라서 극우라고 분류되는 집단과 주장을 사회에서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자 수단이 된다. 이렇게 마치 범죄자나 질병을 대하듯이 타자화된 극우세력에 대해 처벌하고 처치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극우화되는 청소년들’이 주요 문제로 부상한 이유 중 하나는 이와 같은 극우 담론의 성격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회병리적 현상이 대두할 때 청소년들은 늘 그로부터 보호받거나, 그에 영향을 받으면 치유되어야 할 대상으로 같이 거론되곤 했다. 청소년들은 90% 이상 대다수가 학교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집단적으로 관찰되기도 쉽다. 나아가 그들에게 교육이나 통제를 가하기도 쉽다고, 혹은 가해야만 한다고 정책적 논의가 흐르기 십상이다. 연령과 성별을 기준으로 집단을 묶어서 호명하는 언론의 세대론적 논의 방식과 청소년들을 한 덩어리처럼 인식하는 전통이 결합하여 “요즘 청소년(남성)들이 문제”라는 구도로 논의되는 상황을 종종 접할 수 있다. 이처럼 ‘극우화되는 청소년들’이란, 극우와 청소년 둘 다 타자화되어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이어 청소년 보호주의(‘우리 아이들을 극우에 물들지 않게 지켜야 한다’)와 청소년 혐오(‘요즘 애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극우 이런 데 빠져 있다더라’)가 버무러져 있는 담론이다.

청소년에서 청년까지 확장해 본다면, 이는 ‘20대 개새끼론’ 등의 청년 담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청소년인권운동은 청소년-청년, 젊은이들을 집단화하고 타자화하여 논의하는 방식 자체가 나이주의적이라고 비판해 왔다. 청소년-청년이 사회 체제 안에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문제는 다른 연령 집단이나 사회 전체의 문제와 비슷하거나 얽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실제로 청소년들이 극우화되어 있는가 아닌가, 혐종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먼저, 청소년 남성들이 유의미하게 다른 연령-성별 집단에 비해 극우적 가치관과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결국 논의되는 방식이나 대책은 비슷했으리라고 감히 예상한다. 그리고 여러 조사들을 살펴보더라도 남성 청소년 중 어떤 집단이 극우적 주장을 갖기 쉬운지, 어떤 사회적 조건이 작용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의 어떤 행태가 문제인지를 짚기 위해서는 더 섬세하고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을 위해서는 ‘극우가 문제’라는 전제 이상으로 우리 사회와 학교 교육에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수적이다. 10대 정치인식조사를 한 한국일보 보도에서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 “10대 대부분은 남녀 구분 없이 계엄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상식적인 사고관을 보여줬다. 청소년 다수가 극우화했다기보다는 남성 10대를 중심으로 우경화하고 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³

혐종과 극우를 배태한 것은 ‘정상적인 우리 사회’다

‘혐종 음모론과 극우적 사상에 빠진 청소년-청년들을 이해하자’ 같은 말을 하려는 것으로 오해하지는 말길 바란다. 틀린 것이나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틀렸다는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 하지만 ‘무엇이 틀린 것인가’에 관해, 오로지 ‘혐종-극우’(또는 ‘윤석열 지지자’, ‘부정선거론자’)만 틀렸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극우 현상을 품고, 키우고, 낳은 것이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믿는 이 사회 체제라는 것을, 극우는 현재의 경제-사회-정치 체제에서 나타난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더 철저히 반성하고 변화하려는 접근법이 요구된다. 대표적인 예로, 기존 학교의 운영 방식과 문화 자체가 극우적 또는 극우 친화적이진 않았는지, 극우적 가치관이 배양되기 쉬운 조건을 교육체제와 사회체제가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10대 청소년이었을 때, 중학교에 입학했을 무렵부터 학교생활에 여러 불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내 답답함과 분노가 정당하다는 확신이 없었다. 세상에 대한 의문이나 삶에 대한 고민 등 학교 수업(정확히는 시험 공부)과 상관없는 질문들은 허락되지 못했다. 학교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강요,

³ 한국일보, 고교생 10명 중 4명 ‘개표 부정’ 믿고 계엄엔 반대...’십대남’ 현상 확인됐다, 2025년 9월 2일.

획일적 제복과 외모 단속, 통제와 처벌 위주의 규칙, 군사주의적 질서, 극심한 경쟁과 능력주의 옹호 등 학교 생활의 모든 것이 반민주주의적, 극우적 문화의 형태였다.

학생을 평가하고, 벌 주고, 겁을 주는 문화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하는 체념도 일상화되었다. (중략) 어른들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친구와 경쟁해서 이겨야 했다. 폭력은 나쁜 것이라고들 했지만 “재는 좀 맞아야 해”라며 어떤 폭력은 정당화되기도 했다. 학교가 실제로 가르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능력주의와 경쟁의 논리였다. 입시와 성적 이외의 것은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되었고, 학생들은 불안과 자기혐오를 내면화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중략)

비교와 경쟁에 익숙해진 삶 속에서 차별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불안감을 부른다. “인정받으려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믿음이 내면화된 결과는 일베와 같은 극우적 사상이 활발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날 청소년·청년의 극우화는 한국 사회와 교육의 오랜 극우적 체제가 마침내 꽃을 피운 결과일지도 모른다. 혹은 이미 꽃을 피운 지도 오래되었으나, 별거 아닌 일처럼 취급해왔기에 뒤늦게 발견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학교야말로 오랜 세월 동안 극우적 가치와 문화가 가장 익숙하게 재생산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체제를 비판하고 극복하려 해 온 운동의 약화, 민주주의적 가치의 헤게모니 상실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⁴

요즘 학교에서는 교실 수업을 자주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금쪽이’라는 멸칭으로 흔히 부른다. 그런 식의 명명과 이야기되는 방식도 문제적인데, 최근 어느 중등 교사의 글에서 동료 교사가 “그 학생 다문화인가요? 아니면 특수?”라고 묻더니, 아니라고 하니까 “다문화도 아닌데 왜?”라며 놀라더라는 대목⁵을 읽은 적이 있다. 표현 방식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렇게 드문 인식이나 태도도 아니라고 한다. 다문화라서 문제 학생일 거라고 전제하는 교사들과 중국인들을 두려워하거나 혐오하고 내쫓고 싶어 하는 ‘혐중’ 학생들 사이에는 과연 얼마나 거리가 있을까. 애초에 인종주의나 혐오·차별, 인권을 교육에서 다뤄야 할 주요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학교에서 도대체 무엇부터 바뀌 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다. 전방위적인 고민과 노력 없이 ‘극우에 대한 대증요법 처방’만을 반복해서는 효과가 미약할 수밖에 없다.

⁴ 난다, 〈청소년 극우화와 다 글러먹은 대안들 : 청소년인권운동의 실마리〉, 제12회 청소년활동가마당 발표, 2025년 10월 25일. 본문은 많은 부분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는 난다 활동가의 글의 문제의식을 가져오고 있으며, 단체에서 여러 활동가가 토론한 내용을 반영하여 쓰였음을 밝혀 둔다.

⁵ 진선, 〈사과하고 고백할 용기를 낼 때〉, 《오늘의 교육》, 87호.

장기적으로 보서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사회와 공동체를 만들고 강화하자’라는 것이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SNS나 온라인-게임 커뮤니티에 더 소속감을 느낀다면 이는 학교나 여러 사회적 집단들이 청소년들에게 그만큼 의미 있는 공간과 관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교육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교육의 목적과 의미가 해체되고 교육 체제가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할 수 있다’라던 학교 주류의 비전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험중-극우’가 걱정된다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들 게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접해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반, 신뢰하고 의지하는 공동체, 의미 있게 사회와 세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사실 이는 청소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토론5]

폭주하는 남성성의 렌즈로 볼 때

수수(한국성폭력상담소)

극우를 논하는 이유

탄핵 이후, 극우와 관련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집단의 이유를 살펴보고, 이 논리가 어떤 대중에게 가닿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권운동의 차원에서도 극우를 논하는 것은 중요하다. 극우가 혐오와 차별의 논리로 결집하며 인권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우에 대한 여러 논의 중 내게 특히나 흥미로웠던 것은 2030 남성의 특정 실천과 사고의 경향을 극우화는커녕 보수화라고도 부르면 안 된다는 담론의 부상이었다⁶. 2025 대선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2030 남성이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나 “지나친 페미니즘의 영향을 막기 위해서라면 법규칙을 어기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문항에 다른 세대 여성과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동의 응답한⁷ 것을 보수나 극우적 사고라고 부르지 않으면 무어라 부른단 말인가? 이 담론이 특히나 흥미로웠던 이유는 극우에 대항해야 한다는 논의에 일견 동의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혐오와 차별에 기반한 폭력은 극우라는 카테고리에서 제외한 후,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취급하며, 옹호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극우를 논의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혐오와 차별은 어떨 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일까?

물론 2030 남성이 극우화되었다고 하지 말자는 말에는 위와 같은 입장 이외에도 여러 이유(혹은 외피)가 있어 보인다. 그중 하나는 극우의 정의를 둘러싼 논란이다. 실로 ‘극우’는 다양하다. 계엄은 찬성하지만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 계엄은 반대하지만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에는 반대하는 사람, 계엄은 반대하지만 페미니스트를 해고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을 모두 같은

⁶ 22대 대통령 선거 직후 유권자 여론조사를 통해 2030 남성들의 여러 응답을 둘러싼 진보 인사들의 설전이 있었으나, 이 토론문에서는 모두 열거하지는 않기로 한다.

⁷ 해당 문항에 대한 ‘동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2030 남성 평균 23.5%, 그외 모든 연령과 성별 9.1%, 40-70 남성 평균 11.5%, 출처: 2025 시사인 대선 사후 유권자 인식조사

범주로 묶어 정의해도 되는가? 극우 정의에서 빈번하게 인용되는 정치학자 카스 무데는 극우를 “자유민주주의에 적대적인 반체제 성향의 우익”이라 정의하며, 극우 안에서도 ‘극단우익’과 ‘급진우익’ 등 특징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2025년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의 세밀한 분류에 딱 집어넣기엔 어려움이 있다.

이런 혼란 와중에 권김현영은 “극우가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극우란 일관성 있는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타자를 적으로 취급하여 내집단의 동질성을 높이는 정치적 전략”이라고 논의한다⁸. 그렇기에 ‘극우가 타깃하는 집단’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극우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손희정은 극우를 “나와 다른 존재,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존재를 기꺼이 배제하고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제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실천하는 사람들”⁹이라고 규정한다. 다시 돌아가서 2025 대선 유권자 여론조사의 문항의 동의 응답이 무엇을 배제하고 제거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자. 중국, 페미니즘¹⁰. 바로 한국 사회의 소수 집단이다.

젠더: 폭주하는 남성성의 렌즈를 제시한 이유

민주주의 구하는 페미-퀴어-네트워크는 윤석열의 계엄 직후 “폭주하는 남성성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포했다. 단순히 윤석열이 남성 정치인이기 때문은 아니다. 폭주하는 남성성의 시대란 윤석열 등의 극우 정치를 표현하는 구호였다. 극우 정치는 권력 구조를 가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며¹¹ 차별과 혐오를 영속시킨다. 윤석열은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부정한 대표적 정치인이기도 하다.

남성성의 렌즈는 구조를 관찰할 때 매우 유용하다. 남성성이란 무엇이 남성적이고 여성적인지 본질적으로 구분하는 개념도 아니며, 남성다움이라 여겨지는 특질의 목록도 아니며, 다만 젠더를 체험하는 구체적 실천을 포착하는 개념이다¹². 이 어렵고 복잡한 말을 과감히 압축해 보자면, 폭주하는

⁸ 권김현영(2025), “윤석열은 어떻게 극우 청년들의 우상이 되었나”, <폭주하는 남성성>, 동녘.

⁹ 손희정(2025), “극우여성3.0: 한국 여성 극우화의 경로”, 2025 ‘우리 민주주의 다시 보기’ 심포지엄 자료집(미간행)

¹⁰ 권명아(2025)는 인종주의와 젠더 정치가 파시즘 증오 정치의 핵심에 있다고 논의한다. (권명아, 2025, <역사적 파시즘 체제의 인종주의와 젠더 정치>, 갈무리.)

¹¹ 릴리 출리아라키(2025), <가해자는 모두 피해자라 말한다>, 은행나무.

¹² 추지현(2025), “폭력의 연속선과 남성성‘들’”, <폭주하는 남성성>, 동녘.

남성성의 렌즈란 젠더 관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많은 사건을 젠더, 즉 “부정의와 불평등의 구조를 다루는 도구”¹³로 해석하자는 것이다.

폭주하는 남성성의 구조적 렌즈는 얼핏 쉽게 해석되지 않는 사안에 새로운 연결점을 드러나게 한다. 2023년 잇따라 보도되었던 흥기 난동 사건은 어떤 구조의 문제인가? 혹자는 연령과 성별을 막론한 폭력이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이 길거리에서 겪던 공포를 간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기에 페미니즘적 가치가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남성들이 남성으로서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할 경우, “현행 젠더 관계에서 이득을 얻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거기서 배제된 이들과 어떻게 함께 구조적 불평등을 문제화할 것인지”(추지현, 2025)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일은 홀로 일어나지 않는다. 맥락과 관계와 시간과 공간의 교차 속에서 벌어지며, 이 교차는 사회운동이 말하는 사회 구조를 뜻한다. 다시 흥기난동 사건을 예로 들자. 이 일들은 정신병리적 문제를 가진 개인이 홀로 일으킨 일처럼 탈구조적으로 사유되었다. 하지만 젠더 관계의 구조로 읽을 경우 우리는 이 사건들의 이해를 넓혀 성폭력,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 여성을 착취하는 것이 남성으로서 안녕을 담보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신자유주의와 남성기득권정치의 문제를 볼 수 있게 된다.

극우 정치는 사안에 반응은 하지만, 구조적 접근을 막는다. 윤석열의 경우도 그렇다. 그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하며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폭력 무고죄 강화를 외쳤지만, 성범죄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신림동 강간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중밀집장소에 장갑차를 배치했으며, 딥페이크 성폭력이 대두되었을 때 “신종범죄” 근절과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을 요구했다. 그는 폭력을 범죄로서만 이해하고, 폭력이 일어나는 혐오와 차별의 구조를 부정한다. 성폭력이 성범죄가 될 때, 일상적 관계 안에서 성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원칙은 펜스를과 같은 협소한 금지로 대체되기 쉽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개정하여 더 많은 성폭력 가해가 법의 언어로 인식될 수 있게 하는 구조적 개선 대신 단순 형량 강화만 추진되게 한다.

폭력에 대한 단선적 대응은 배제와 혐오를 용이하게 한다는 문제도 갖고 있다. 폭력이 범죄로 정의 될 때,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안전이라는 담론이 힘을 얻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사회의 ‘정상성’에 포함되지 않는 소수자성은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겨지기 일쑤다. 유럽 극우 정치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 대신 이민자를 “타깃”으로 삼아 ‘여성’, ‘자유’, ‘인권’의 이름으로 ‘안전’이라는 외피를 쓴 인종주의 혐오를 진행시켰다.¹⁴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예멘 난민을 페미니즘의

¹³ 나영, 수수(2019), “젠더와 다시 만나기: 구조를 전복하는 인권운동을 위하여”, <인권운동> 2호.

¹⁴ 구정은(2025-03-03), “세계는 가히 ‘극우 정치의 중흥기’다”, 주간경향

이름으로 반대하던 움직임과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여성에게 위험하다는 소셜미디어의 메아리들이 반복되고 있다.

극우의 혐오 선동에는 제도 정치의 기여를 무시할 수 없다. 서부지법 폭동에서 보았듯 ‘국회의원과 미국정부’라는 제도 정치가 나를 지지한다는 믿음은 직접적 폭력의 손쉬운 계기가 된다. 한국 사회는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혐오와 차별이 공식적 언어로 발화되며 공고해지는 경험을 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이재명 정부는 광장의 이름으로 정당성을 호소하지만, 이번 정부 역시 광장의 요구를 취사선택하여 파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차별금지·성평등·인권·소수자권리는 비상행동 온라인 공론장 ‘천만의 연결’에서 1위(전체 응답 중 25.9%) 사회대개혁 과제였으나,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여전히 정치적 리스크로만 여기는 점이 그러하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가 되며 성평등의 가치가 부처 이름으로서 전면화되나 싶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남성 역차별’ 문제를 강조하며 성평등가족부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최근 혐종 시위에 단호한 대처를 지시하면서도 이를 혐오와 차별의 논리보다는 “국익 훼손”으로 접근하는 지점에서 극우 정치와 일견 상통하는 면이 있다.

구조적 접근과 직관성의 문제, 감정의 문제

폭행과 관계, 온라인 미디어, 커뮤니티, 정치를 ‘폭주하는 남성성’으로 엮어서 젠더라는 구조적 접근을 시도했던 것이 한국성폭력상담소 2024~2025년 활동의 큰 축이었다. 예기치 않게 계엄을 통과하며 극우로 호명되는 혐오 정치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는 지금, 모두가 함께 ‘구조적 접근’을 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도 고민하게 된다.

반성폭력 운동 현장에서 나를 고뇌에 빠지게 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불안을 토대로 소수자를 배제하자는 주장을 하는 여성들이다. 손희정은 ‘어색해야 마땅한 여성과 극우의 공존’은 “근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한국 가부장제에 있다”¹⁵고 논의한다. 제도 정치가 혐오와 폭력을 용인하는 지금, 안전하고픈 욕구와 혐오가 만나서 빚어내는 역동은 폭발적이다.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2016년, 인권운동장은 “평등해야 안전하다”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고, 2023년 공원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방치 국가 규탄 긴급행동은 “성평등해야 안전하다”는 제목의 집회를 열었다. 오랫동안 길어올린 평등이라는 급진적이고 근본적 안전은 어떻게 해야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

¹⁵ 손희정(2025-09-14), “‘여성 극우 3.0’은 어떻게 등장했나”, 한겨레21.

이 지점에서 감정의 동학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최근 극우 관련 논의는 혐오의 정서가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뿐 아니라 사랑¹⁶에 기초하거나, 쾌락¹⁷과 연루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소수자를 적개하며 얻는 “우월감을 주는 감정적 만족감”은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폭주하는 남성성의 렌즈는 개인의 폭력 행위를 “또래 문화의 남성 동성사회성,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압적 통제, 남초 커뮤니티의 디지털 정동, 능력주의 모순, 징병제와 정당정치의 언설”(추지현, 2025)이란 층위에서 다룰 수 있게 만든다. 이처럼 ‘혐중’에 맞설 전략을 찾기 위해, 감정의 토대를 만드는 구조를 어떻게 다뤄나갈지 함께 고민하고 싶다. 이를 위해 젠더를 다루며 변화를 모색하는 글 토막들을 공유하면서 토론을 마친다.

“오늘날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남성성의 사회화다. 이것은 미개를 길들이는 문명의 관점이 아니라, 남성성과 남성들을 사회라는 연결망 속으로 다시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무조건적인 환대가 아니라 민주적이고 평등한 질서를 새롭게 창조하고 설득하는 일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남성들이 옮겨주고 있는 허황된 부담감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함으로써 고립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 최태섭(2025), “남자라는 난제: 남성성의 현재적 상황들”, 문화/과학 122호

“온라인의 혐오 구조에 대한 리터러시는 한편으로 타인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폭력이 개인의 발화라는 형식을 빌려 소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구성해야 하는 윤리적인 원칙과 관련된다. 이걸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온라인 구조에서는 이걸을 가진 존재—그리고 나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은 공격의 대상이 되어도 마땅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나의 취약성과 피해에 집중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의 정치를 수행하다 보면 타인의 고통이나 취약성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이다. (...) 주목이 화폐가 되는 세상에서 더 많은 주목을 얻으려면 빠르게 정보가 순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순환 고리에서 원활하게 유통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삶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타인의 삶에 대한 공감적 정동은 불필요한 것이다. ‘우리’ 안의 차이를 들여다보면서 인정하는 존중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려면 이 속도의 정치가 사실상 플랫폼의 이익에 복무할 뿐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 김수아(2025), “온라인 속도의 정치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상상하기 위하여”, 문학과 사회 통권 제 150호.

¹⁶ 엄기호(2025-09-11), “극우 포퓰리즘의 ‘위험한 사랑’에 어떻게 맞설까”, 한겨레21.

¹⁷ 박권일(2025-10-17), “‘혐중’의 쾌락”, 한겨레.

“혁명 이후의 시간, 단절 이후의 시간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하찮고 시시한 일들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혁명보다는 전환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페미니즘과 일상의 정치를 말했던 어느 강의 자리에서 “급진적인 싸움을 더 이상 조직할 수 없기 때문에 하찮은 것들에 시선을 돌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좌절감이 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때 하찮은 것이야말로 우리를 살린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이 종종 생각한다. 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싶다.”
- 손희정(2024), “젠더, 한없이 하찮고 시시한 전환의 키워드”, 문화/과학 120호.